

[직무발명쟁점] 수인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소송 제기 - 확인의 이익 불인정, 소 각하 판결: 대구지방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5가합2250 판결



## 사안의 개요

- (1) 퇴직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을 제기
- (2) 회사의 대응방안으로 재직 중 공동발명자 중 1인 명의로 퇴직자, 공동발명자를 상대로, 또한 직무발명 승계인 및 등록권자 회사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, 퇴직연 구원은 진정한 발명자(디자인 창작자)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판결로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 제기함

**쟁점** - 공동발명자가 다른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

확인을 소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

### 확인의 소 적법요건 - 확인의 이익 판단 법리

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다67399 판결 “확인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, 위험이 있고 그 불안,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.”

### 판결요지 - 확인의 이익 불인정, 소 각하

들, 즉 이 사건 소에서 피고 B의 창작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된다고 하더라도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진정한 창작자에 대해서 다툼이 존재하였던 이상, 그것이 디자인등록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단서의 '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혔던 창작자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'에 해당하여 창작자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점, 창작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,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진정한 창작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,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확인의 소가 원고의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·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첨부: 대구지방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5가합2250 판결

이공계 변호사/변리사, 발명자 중심 보상청구소송, 다년간 업무경험, 소송비용경감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